



: 2019-12-19

## 광 주 지 방 법 원

### 제 1 행 정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8구합13667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 
의 소

원 고 A영농조합법인  
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

피 고 해남군수  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일  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동호

변 론 종 결 2019. 10. 17.

판 결 선 고 2019. 11. 14.

### 주 문

1. 피고가 2017. 12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처분의 경위 등

가. 원고는 2014년 B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. 9. 16. 피고로부터 보조금 336,562,000원을 지원받고 자부담으로 38,052,000원을 들여 2015. 3. 12. 전남 해남군 C 외 1필지에 선별장 378㎡, 저온창고 72㎡, 관리사 111.26㎡(이하 위 선별장, 저온창고, 관리사를 '이 사건 시설물'이라 한다)를 신축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7. 12. 29. "원고가 위 보조사업 완료 후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336,562,000원을 반환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라"고 명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. 8. 30. 기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, 을 제11, 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처분의 적법 여부

#### 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.

#### 나. 관계 법령



별지 기재와 같다.

#### 다. 판단

갑 제2, 3, 5, 6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1)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. 1. 9. '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택배업을 하는 D과 김 공장을 하는 E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, 원고가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임대하고 약 1,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으므로 그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, 보조사업자 선정과정,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, 전라남도에 관련 내용을 이첩한다'는 취지로 의결하였고, 피고는 위 의결 내용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D과 E에게 돈을 받고 임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그런데 해남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관련 기록과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를 한 뒤 2017. 4. 11. 원고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범죠흐의가 인정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고, 위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누구인지,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, D은 '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, 이 사건 시설물을 택배업에 이용하는 동안에도 선별, 판매, 보관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, 다만 선별장에 비해 저온창고가 너무 작아 이용률이 적은 편이다'라고, E은 '명절 무렵



김 제품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여 약 20~30일간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하였고,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적은 없다'고 각 진술하였으므로,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한 '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D과 E에게 돈을 받고 임대하였다'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2)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농산물 선별 또는 신선 보관 외의 용도인 D의 택배업과 E의 김 보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, 앞서와 같이 원고가 이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,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그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나 예상보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으며,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D과 E에게 이 사건 시설물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.

3)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이 336,562,000원에 이르고, 원고는 전남 해남군 F 지역 청년회원 중심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, 이 사건 시설물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.

#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하현국



.  
.  
: 2019-12-19

판사 오한승

판사 최파라



## 관계 법령

### ■ 지방재정법

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32조의9(재산 처분의 제한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(이하 "중요재산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3. 담보의 제공

### ■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37조의5(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)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(이하 이 조에서 "중요재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

### 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



**제28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** ① 군수는 지방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
5.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6.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나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7.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)** ①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,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